

10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말레이시아]

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감귤류(신선과일)의 말레이시아 수입 시 세관 규정

- 2016년 2월 16일 기준 수입허가 국가 및 수입품명(일반명/학명)

승인된 국가	일반명	학명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라임(Lime)	Citrus aurantifolia
1. 호주 2. 중국 3. 이집트 4. 남아프리카 5. 스페인 6. 미국	오렌지	Citrus sinensis
1. 아르헨티나 2. 호주 3. 중국 4. 키프로스 5. 이집트 6. 인도 7. 대한민국 8. 파키스탄 9. 남아프리카 10. 스페인 11. 대만 12. 태국 13. 터키 14. 미국 15. 베트남	만다린 오렌지	Citrus reticulata

승인된 국가	일반명	학명
1. 아르헨티나 2. 호주 3. 중국 4. 키프로스 5. 이집트 6. 프랑스 7. 이탈리아 8. 뉴질랜드 9. 남아프리카 10. 스페인 11. 터키 12. 미국	레몬	Citrus limon
1. 베트남	포멜로	Citrus maxima
1. 아르헨티나 2. 호주 3. 키프로스 4. 이집트 5. 프랑스 6. 이탈리아 7. 남아프리카 8. 스페인 9. 터키 10. 미국	자몽	Citrus paradisi
1. 태국	라임(Satsuma Orange)	Citrus hystrix
1. 일본	사츠마 오렌지	Citrus unshiu

- 상기 수입허가 국가 목록은 2016년 2월 16일 업데이트
- 상기 목록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명기된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부서 ‘Plant Biosecurity Division’ 내, ‘Import Control & PRA Unit’로 수입 승인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Import Control & PRA Unit, Plant Biosecurity Divis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Level 2, Wisma Tani, Jln Sultan

Salahuddin, 50632 Kuala Lumpur, Malaysia

- 연락처 : +60-3-2030-1400

○ 수입조건

1. 필요 시, 관계 부서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2. 수입허가(IP) 사본을 반드시 위탁자에게 전달해야 함
3. 위탁화물은 (a) 수입허가(IP), (b) 말레이시아 수입허가 참조번호 그리고/
또는 검역처리증명서의 참조번호가 명기된 식물위생검역증명서(PC) (c)
관련 시, 검역처리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4. 위탁화물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 토양, 해충,
질병, 잡초종자 및 그 외 수출 국가의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오염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함
5. 위탁화물은 말레이시아에 도착 시, 통관을 위해 MAQIS(말레이시아 수출
입식품검역처) 책임자가 실시하는 육안 검사를 받거나 또는 사전 분석을
받아야 함

○ 추가 사항

- 식물위생검역증명서(PC)의 발행은 다음의 말레이시아 수입허가(IP) 참조번호
기입 : JPKxxxxxxxxxxxxxx
- 신선감귤은 다음과 같은 검역해충에 무관해야 함
 - a) 곤충 - 초파리종 (수출국에 존재하는 초파리 목록에 근거)
 - b) 박테리아 - 1. *Liberobacter asiaticum* (Citrus Greening)
2. *Liberobacter africanum* (Citrus Greening)

출처: 말레이시아 농업부(DOA) 홈페이지

http://www.doa.gov.my/c/document_library/get_file?uuid=f3642e02-4233-421d-a273-8d07027e7f9a&groupId=338810

2. 농업부 산하 수출입식품검역처 Q & A

Q. 땅콩의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 요건은?

A. 땅콩 및 땅콩 함유식품을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아플라톡신 성분 함량을 알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Q. 꿀의 수입에 필요한 인증 조건은?

A. 꿀을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동물용 의약품(클로람페니콜)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Q. 치즈의 수입에 필요한 인증 조건은?

A. 치즈를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병원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제출된 성분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관계 당국이 승인하고 인증한 실험실이 분석한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Q. 활어의 수입을 위한 요구 조건은?

A. 말레이시아 수산개발청(LKIM)이 발급하는 수입 허가 및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Q. 냉동 생선 및 가공 생선의 수입을 위한 요구 조건은?

A. 말레이시아 수산개발청(LKIM)이 발급하는 수입 허가가 요구됨

Q. 활어에 대한 검역 기간은?

A. 7~14일

출처: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MAQIS) 홈페이지

http://www.maqis.gov.my/en/soalan_lazim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MARIGOLD 브랜드 우유 일부 제품 리콜

- MARIGOLD HL 우유의 현지 제조사인 Malaysia Milk Sdn Bhd는 지난 10월 15일 공문을 발표하고 마리골드 HL 흰 우유(200ml, 1L)와 딸기우유(200ml, 1L) 그리고 식물성 스테롤 첨가 우유(1L) 등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즉각적이며 리콜 실시함
- 리콜 대상 제품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11월 7일 이전까지 유통기한인 경우, 그리고 사라왁, 사바, 라부안에서는 11월 11일 이전까지 유통기한인 경우에 해당함
- Malaysia Milk 社の 품질관리기관 및 제조팀은 일부 우유 제품의 품질이 박테리아의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으나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되었고, 문제 제품을 섭취한 경우 가벼운 위장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한편, 마리골드 HL 우유의 싱가포르측 제조사 Malaysia Dairy Industries는 싱가포르에 유통된 동 브랜드 제품은 문제와 무관하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출처: 2016년 10월 16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http://www.nst.com.my/news/2016/10/180760/marigold-milk-recalled-supermarket-shelves-immediate-effect>